

경북·강원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

주택도시보증공사

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대출



구 분	주요 내용
대출대상자	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의 주택이 반파/전파/유실되어 신축(재축 포함),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, 군수,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용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
대상주택	호당 전용면적 85㎡이하 단,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(도시계획구역 제외) 지역은 100㎡ 이하인 주택
대출한도	○ 구입자금 - 특별재난지역 : 최대 8,320만원 이내 - 일반재난지역 : 최대 3,120만원 이내 ○ 신축 및 개량자금 - 특별재난지역 : 전파 및 유실 - 최대 8,320만원 이내(8,840만원) / 반파 - 최대 4,160만원 이내(4,420만원) - 일반재난지역 : 전파 및 유실 - 최대 3,120만원 이내(3,640만원) / 반파 - 최대 1,560만원 이내(1,820만원) * ()는 내진설계 시 적용 ※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음
대출기한	20년(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)
대출금리	연 1.5% ※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임(2021.7.1 기준) ※ 이자 매월 후취
대출금 지급	○ 구입자금 : 일시불로 하여 채무자가 지정 또는 위임한 예금계좌에 입금 ○ 신축 및 개량자금 : 착공(공사신고) 후 70%, 준공 및 후취담보 취득 후 30%를 지급
중도상환해약금	없음
부대비용	수입인지대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%씩 부담 (대출금 5천만원이하 면제) ※ 근저당권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은 고객 부담
기 타	○ 구입자금 대출신청 시기 :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. 다만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○ 구입자금 중복대출 확인 : 대출신청인(만 19세 이상 세대원 포함)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취급 제한

준비서류

1. 시/군/구 용자대상 통보서
2. 건축허가서(신고서)
3. 반파인 경우 개보수 신고서(공사견적서) 및 공사완료 보고서
4.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(반파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)
5. 공사도급계약서
6. 인감증명서(설정용)
7. 분양(매매)계약서(구입자금의 경우)
8. 주민등록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)
9. 기타필요서류

유의사항

- ※ 상기 내용은 2021.7.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추후 정부시책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※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※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(상환)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.
- ※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 3개월 이내 이자율+ 연 4.0%, 3개월 초과시 이자율+연 5.0%가 적용됩니다.(최대 연 10%)
- ※ 금리인하요구권·대출계약철회권 :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·대출계약철회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- ※ 안내장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 상품들의 필요 공시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고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(☎1599-08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